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[별표 2]

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

전문인력(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)

경영 분야

- 1.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1.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교원
- 2.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 | 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기사 수 이상의 교원
- 3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 사한 사람
- 법률|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
- 5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
- 6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
-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기술 분야

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또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
- 4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3.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
 - 4.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 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5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
 - 6.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사람
 - 가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나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
 - 다. 국 · 공립 연구기관
 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